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49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나.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다. 자원봉사자 우대 규정 신설(안 제19조)

라. 다른 조례의 개정: 감면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4. 4. 25.~5. 16./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물 및 평생 학습관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19조(자원봉사자 우대)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관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개정안 전체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오탈자 등을 정비함.

○ 검토 결과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하는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1)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먼저, 「지방자치법」 제153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3)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기에 본 조례의 감면 기준은 이에 부합한다고 여겨짐.

-
-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2)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혜택(안)〉

부서	대상시설	감면률	비 고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50% 이내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미래교육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50%	프로그램 수강료
문화체육과	스포츠센터 및 체육시설	30%	시설 사용료
주차문화과	공영주차장	30%	시설 사용료

- 한편, 자치법규 개정 시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⁴⁾이나,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함께 개정해야 할 경우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⁵⁾ ②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⁶⁾이 있음.
- 본 개정안의 감면사항과 관련하여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리적인 개정 즉, “기본이 되는 조례나 규칙에서 제도가 신설·변경되는 경우 관련 조례나 규칙을 기본이 되는 조례나 규칙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4)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참조

5)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됨

6)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을 것
-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있고, 관련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다수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우리 구(區)에서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에 해당 위원회와의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11개의 자치구⁷⁾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우수지원봉사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바 있어 이러한 추세를 따라 장기간 활동한 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사료됨.

7) 광진구, 강동구,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성북구, 용산구, 노원구

참 고 자 료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51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문 정리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근거 신설(안 제10조)
- 나. 통장 직무교육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4. 25.~5. 16./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교육과 직무수행 시 사고를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편의 제공)에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의2(통장 교육)에는 통장 교육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함.

○ 검토 결과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자 하는 통장 단체 상해보험과 통장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었던 실정임.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통장 역량 교육은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코로나19 시기(2020~2022)를 제외하고는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에는 통장직무 및 공직선거법 숙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더 나아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기 진작 교육을 진행하고자 관련 예산 증감¹⁾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 한편 최근 고령화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통·반장 구인난이 극심한 실정이라는 각종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통·반장’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통·반장은 행정시책 홍보, 전입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 보조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수행해왔던 만큼 통·반장의 장기적인 공석은 자칫하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
-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교육과 공무 활동을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통장 단체 상해보험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²⁾이라고 사료됨.
- 다만, 개정안 제10조는 ▲공부의 무료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1) 통장 역량강화 교육 예산

(단위: 천원)

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23	1,400	28,600
2024	30,000	

2) 자치구별 단체상해보험 가입 관련 조항 여부

이용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이 통·반장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통장에게만 해당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자구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편의 제공) 통·반장은----- ----- <u>공부(公簿)의 무료열람,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단체 상해보험</u>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10조(편의 제공)</p> <p>①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公簿)의 무료열람,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규정 자치구 19개구	미규정 자치구 5개구
<p>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중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p>	<p>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양천구, 동대문구</p>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52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법령의 제명에 따라 정비하고 독서실 폐관으로 인한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
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기본법」의 제명 정비(안 제1조)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명
정비(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정비(안 제9조)

라. 독서실 폐관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현행화(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4. 4. 25.~5. 16./ 21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비하고, 청소년독서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제명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 안 제7조제3호(사용료 감면)에서는 관계법령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 안 제9조제6항(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서는 관계법령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
- 안 별표1에서는 폐관된 청소년독서실을 삭제하고, 위치가 바뀐 곳을 현행화함.

[현행 별표1]

연번	명칭	위치	비고
1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운영중
2	영등포본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3길 8	운영중
3	도림1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29가길 12	하나로 통합하여 「도림동 청소년독서실」로 운영
4	도림2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5	양평3가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4길 10	폐관
6	신길3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	폐관
7	신길5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264	운영중
8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93	운영중
9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운영중
10	대림1동 청소년독서실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폐관
11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서울시 영등포로64길 15	운영중

○ 검토 결과

- 이번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청소년독서실 운영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53호로 2024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자치법규 내의 문화
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3)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

-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변경전) 보좌 → (변경후) 도와 일을 처리

(변경전) 심신쇠약 → (변경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라. 입법예고(2024. 4. 25.~5. 1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4.5.17. 시행됨에 따라 사용하던 명칭을 “향토문화재”에서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과 조례 전체에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함.
- 조례 전체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함.
- 안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하고, 현행 별지 제1호서식을 제1호의2서식으로 변경하여 향토유산 지정에 관한 처리 과정을 체계화함.

○ 검토 결과

- 동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1)에 근거하여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2012년 12월 27일 제정된 바 있으나, 이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향토문화재 현황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임.

- 본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용어인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참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되어있음. 그러나 문화재의 “재(財)”는 재물 및 재산의 뜻으로 무형문화재 및 자연물 등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하면서 현재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²⁾와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이 제정 및 시행되었음('24.5.17.). 이를 참고하여 본 일부개정안은 제명과 조례 전체에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

세계유산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 또한 별지1을 추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향토유산 지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향후 우리 구(區) 향토유산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여겨짐.

참 고 자 료

1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